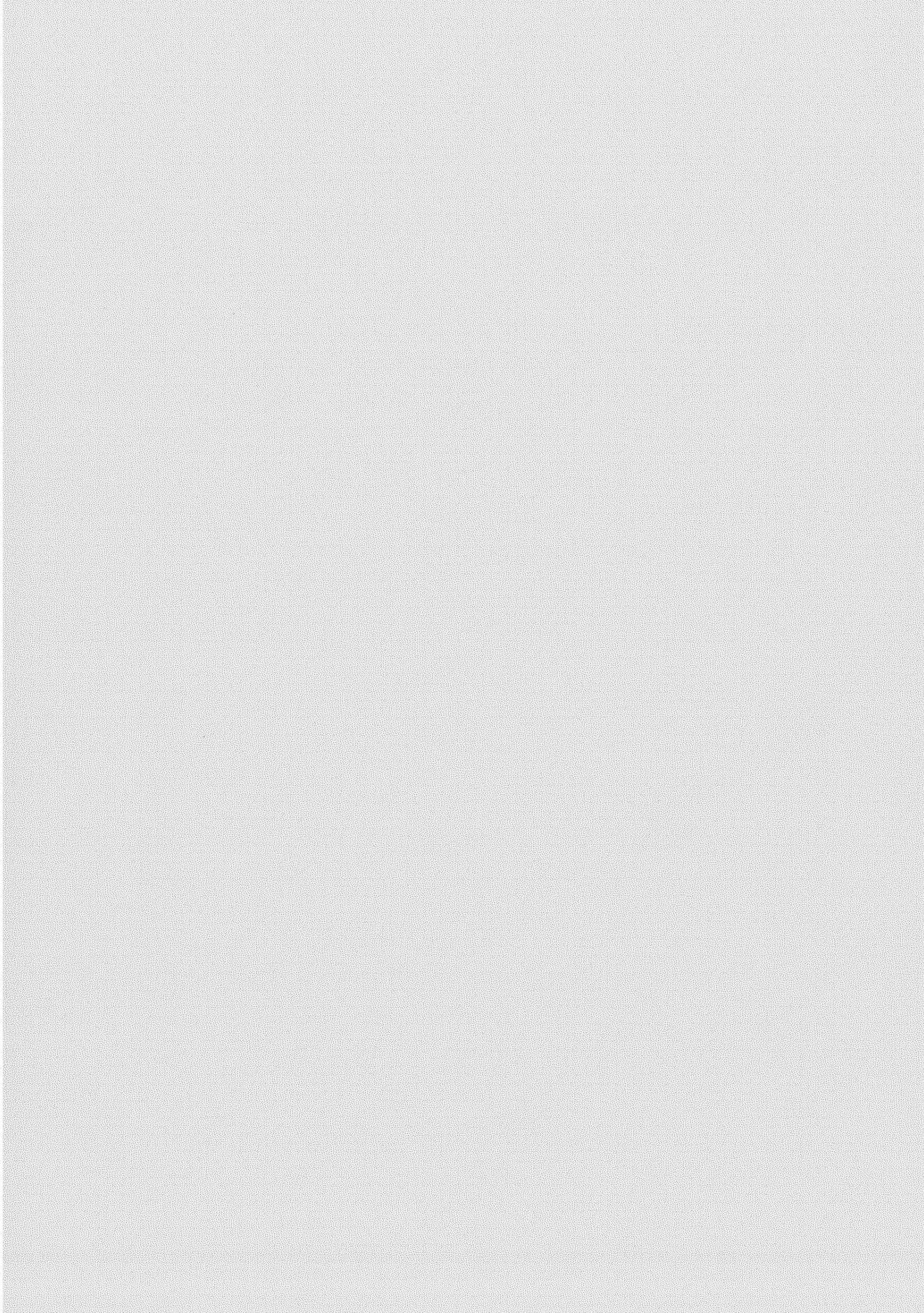


第14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2.5.28.~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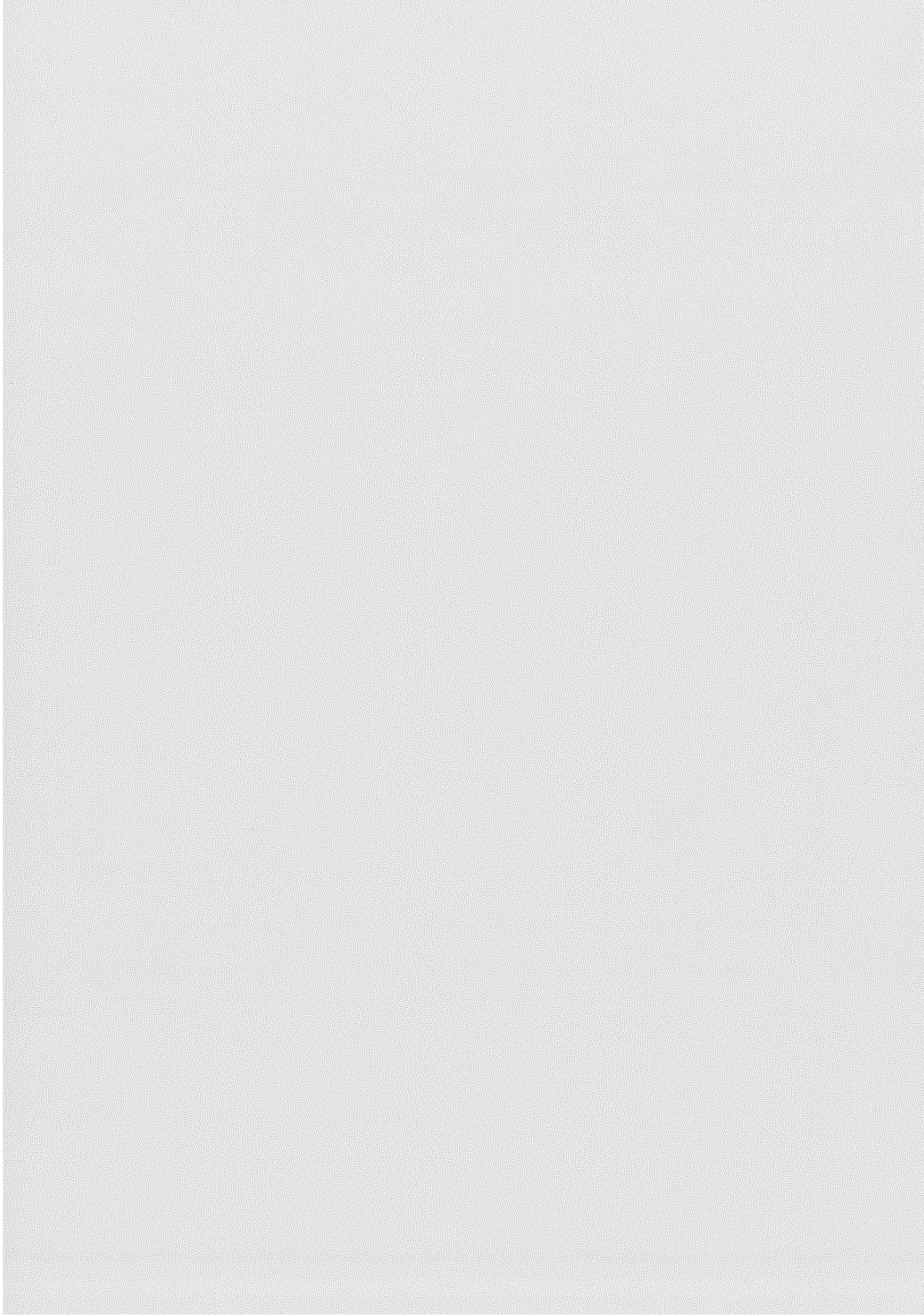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4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21
II.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23
III.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1
IV.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53
V. 부 록	
1. 의사일정안	185
2.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87
3.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5월 28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4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5월 28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4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4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재의)
3.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기수 위원외 2인 발의)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재의)

(11시 02분 개의) 다.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김천호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임시회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천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지난 선거 과정에서 1만 5천여 교육가족은 물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를 새로운 교육감으로 뽑아주신 것은, 그 동안 명예가 실추되고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충북교육계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알고, 주어진 임기동안 150만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저에게 주어진 임기가 1년 6개월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기에, 저는 단기간에 많은 업적을 남기려는 무리한 생각보다는 그 동안 잘못되어 왔던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충북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지

는데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와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의 지도 조언과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제가 공약한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99년에 도내 교육가족의 뜻을 모아 만든, 본도 교육발전계획인 충북교육비전 21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추진토록 설정한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제가 공약한 사항을 착실히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소 저의 의지와 소신의 함축적 표현이며 선거과정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철저히 지향하여, 교육의 시작이요 종착점인 학교를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한편, 변화하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실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행정의 최우선을 학교를 도와주는 지원행정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충북교육의 빛나는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새로운 충북교육사를 창조해야 하는 엄숙한 사명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생각이 깊어져야 교육이 깊어지고, 교육이 깊어져야 미래가 밝아진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지난 40여 년간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서 채득한 경험과 비전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교육감, 민주적인 교육감, 깨끗한 교육감, 정의로운 교육감이 되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며 충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하겠습니다.

저는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충고와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거나 함께 풀어야 할 교육현안이라면 그 누구와도 진지하게 상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직원체는 물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유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공언하신 대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가지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구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청 관계관 불출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청 초등교육과장께서 전국 초등교육과장 연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11시 07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조계환

의사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5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수 교육위원의 2인의 위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2년 5월 20

[제141회-제1차 본회의]

일 공고 제2002-5호로 제14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5월 17일자로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2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5월 14일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총액의 변동없이 세출예산중 2억 6,944만 7천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조정된 세입·세출 각각 1조 135억 2,486만 3천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충청북도과학 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시고, 아울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3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를건을 처리한 후,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5월 30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5월 3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집행청으로부터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안

(11시 12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과학교육 심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과학

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목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심의회 위원의 위촉과 임명, 임기, 위원장 임무 등을 정하고, 과학교육 종합계획 및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 기능, 회의의 소집과 의결 등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14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외 2명의 교육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일시는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과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31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각 국장, 과장급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여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7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

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5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

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별첨 2)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5월 29일 (수요일) 10시 30분

議事日程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초등교육과장께서 초등교육과장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와 5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에 발언대에 나와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석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다만 이충원 위원께서 사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내용은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일 도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11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천호 교육감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정의롭고 밝은 행정, 투명한 인사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다같이 신바람 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당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써,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은, 위의 교육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교과서 중심과 공급자 중심 교육을 탈피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학습의 개별화와 수준별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개별화 교육은 학생 개인 별로, 학생수준에 맞게 원하는 교과를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하는 것인지, 또한 초·중등별로 그것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준별 교육은 그것도 역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초·중등별로 나누되, 초등의 경우는 영어나 예·체능 이런 것들은 전담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급을 수준별 교육을 할 적에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적에는 참 못하는 학급에 배당된 학생들은 오히려 위축되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준별 교육을 할 적에, 작은 학교 학급이 학년 단위로 해서 1, 2학급 있을 적에는, 수준별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학급이 많을 적에는 교사가 많아서 상·중·하라든가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7차 교육과정을 일부 교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를 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차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이 수반이 됩니다.

한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고등학교를 35명으로 한다고 해서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부지도 없고, 지을 만한 장소도 마땅찮은데 이것을 짓다 보니까,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기준이 35명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선진국형의 기준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적당한 기준이라고 보는 것인가, 이렇게 볼 적에 가장 이상적인 학급당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할 적에는 예산

이 얼마만큼 소요되며, 우리 도의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실현 가능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교육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날 학부모들이 내 자식을 학원에 안보낼 것 같으면 대단히 불안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학생이 어린이를 학원에 보내면은 덩달아서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런 실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잡니다.

이 사교육을 받는 우리 도내에 학생층은, 보편적으로 봐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볼 적에 어느 층이 제일 많은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교 나름대로의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지금 현재 그 학원에 보내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음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학습, 보충수업은 학생의 원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보충수업은 어느 정도 심도 있는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가, 학과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보충수업인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충수업을 학교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부형들 생각에는 진학을 하고 있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우리 충북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도시의 실례를 보니까 그러한 부형들의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말씀을 곁들어서 드립니다.

우리들이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점수제를 안하고 뭐 상·중·하라든가 또는 우수하다, 우·양·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는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이 점수제가 필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또한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사회에 가서 직장시험을 볼 적에도 점수제는 불가피한 것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수제를 우리 공교육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위원장 손만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진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진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첫째, 영재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에 관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학교의 선정과 재정지원, 학생선발 실시시기, 교육프로그램, 지도교사 문제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문제는 앞으로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충북교육에서 우리도의 영재교육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문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써, 앞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또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으로서 막중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선출과정과 구성원의 성분이 어떠한에 따라 교육의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말도 있고, 일선 학교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되려고 자청하거나 암암리에 작용을 해서 위원이 되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마땅히 학운위원이 될 만한 인사가 제외되게 됐다는 후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운위원 중 교원위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위원수가 지난 제3대 교육위원 선거때와 10대 교육감 선거때는 극소수였으나, 현재는 많은 인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아는데, 시·군별로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 중에서 교육공무원 인원수를 알려주시고, 시·군별로 교원위원 중에 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원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교원연수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질의는 고심 끝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염치없고 주제넘는 질문인 것 같은데, 3대 교육위원 임기

4년중 이제 3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4대 교육위원회 때부터는 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과거 수십년 전부터 임명직 교육위원이 있었고, 선출과정을 거친 교육위원은 3대째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부 주민과 일선 학교 교직원, 지역교육청에서까지 교육위원 호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교육의원, 위원이 아니고 의원, 공공시·군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심지어 부교육위원장 등으로 호칭하는 것을 듣거나 우편물을 접할 때, 어떻게 해서 호칭도 제대로 못하는가 하는 것과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사에 교육위원으로 초청되어 갔을 때, 지역기관장, 군의원, 도의원 등 초청된 인사속에서 교육위원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예우를 받는 사례 등은 교육계의 체통 문제로 누군가가 바로 잡도록 해야 하고, 모르면 알려주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다음은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감을 찾아가서 해결하려 하고 지역 도의원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풍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해 학교장과 지역 교육장은 제쳐놓고, 교육행정이 한사람의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끌려가는 행정질서 문란은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은 본 위원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러한 처사를 접했을 때마다 교육위원 서로가 공감하고 안타까워했던 문제입니다.

어느 도는 그 도의 교육위원들의 사진을 각급 학교는 물론 전 교육기관, 부서에 배포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교육위원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존재를 알리고 것도 아니고, 교육의 자치, 교육의 주체성, 교육의 자존심, 교권 등을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의결과 집행이라는 역할기능은 달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쪽도 질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천호 교육감께서는 출마공약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충북교육의 현안과 산적한 교육개혁을 물꼬를 트는 일에 김천호를 선택 해주십시오 라고 하셨고, 어제

인사말씀에도, 그 동안 잘못되어 왔던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충북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민 모두와 교육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원에게 새로운 정보 지식을 전수하는 연수는 필수이지만, 교직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분야, 모르고 있는 교직풍토에 대하여 연수를 해서, 흔들리는 교육이 제 자리를 잡도록 하는 자구노력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보는지와 해결될 수 있는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송진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북교육을 전국의 상위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교육감을 비롯한 1만 5천 충북 교육가족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교육은 많은 풀어야 할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급당 인원 35명 이하에 따른 교실부족 문제, 교사부족 문제, 우리사회의 물질만능 풍조에 기인한 교직경시, 62세 정년이하에 따른 선생님들의 사기저하, 학교폭력 문제, 인성 및 덕성 함양을 위한 정서교육의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아직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교육 예산은 GDP 대비 4.7%인 18조 4천 6백억에 이어서, 우리 충북교육 예산도 금년부터는 1조원 대를 넘는 1조 37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공·사립간, 학교와 학교간에 균등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또는 거기에 봉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예산분배에 대한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체육관, 강당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목적교실이라고도 합니다.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가경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3개교는 청주시 복대2동에 담장을 인접하여 소재한 학교로써, 그 세 학교의 학생이 3,400여명의 학생과 180여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세 학교는 다 큰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운동선수의 훈련에 어려움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부모나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도 애로 사항이 많은 바, 이와 같이 여러 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즉 다목적교실을 설립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비좁고 적은 학교에도 참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교육부로부터 강당 건립기금을 따다가 그런 학교에 건립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좀 필요한 학교에 건립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1년 4월 1일자에 작성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사립학교 현황은 학교가 전국 사립학교 수가 10,195개중 사립학교가 1,765개로써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충북의 사립학교 현황을 보면, 총 학교 수 447개중 사립학교 수가 49개 학교로써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학이 우리교육에 공헌하는 바는 상당히 큼니다. 또 고등교육기관에 공헌하는 바까지 따진다면 더욱더 크겠지만, 우선 우리 보통교육에 사학이 공헌하는 바는 지대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는 사학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2세 교육을 사학이 부담하여 많은 인재와 동량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학에도 공립학교나 마찬가지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서, 교육환경이나 모든 분야에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만이, 우리 2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건강보험료 납부실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공립학교는 개인부담과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개인부담금과 재단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부담금으로 재단이 열악한 이런 재단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만큼 학교의 운영에 부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시·도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사립재단에서 얼마큼 부담하는지, 우리 도와 비교해서 몇 개 도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직 및 기능직 또는 선생님까지 포함합니다.

인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는, 현 직급에서 대우공무원 임용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이 5년이상 계속하는 근무하면,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자는 근속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사립학교 일반직 및 기능직 대우선발 현황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직원, 기능직 또 일반직, 교사에 대한 명퇴 2001년도나 2002년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기능직은 최대한도로 10급까지 밖에 승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립학교는 9급까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5,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까지 읽기, 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거와 함께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학년 중에 산수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학습부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비단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해서,

어떤 연수회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연계 지도하는 방안 같은 것은 세우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0교시 수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교시 수업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그 문제로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마찰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0교시 수업의 실태, 우리 도내 학생들의 실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것인지, 만약에 0교시 수업이 문제가 됐다면 또 이것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일선학교에 폐지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셨는지, 그렇다면 타시·도에서는 0교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타시·도와 비교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교육청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사설학원의 심야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결국 학교에서 0교시 수업도 안하고 보충수업을 안하니깐, 불안을 느낀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갑니다.

그래 대충 얘기를 보면 학원의 수요가 최근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학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공교육이 부실화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는 건지, 결국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안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학력제고 방안은 어떻게 세우는 건지, 자료를 구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충북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학생들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벽지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비단 우리 충청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요근래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벽지학교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서 유치원 같은 데에서 비가 세고 그러는데, 우선 비 세는 거는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너무 낡아서 근본적으로 개축해야 되는데 개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폐교될지도 모르는 학교에 시설 과잉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건데,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10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상당수학교가 통·폐합됐는데, 통·폐합된 후에 잘됐다고 하는 곳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어있는 걸로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의 문화의 센터고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급격히 주는데, 학교마저도 경영원리에 입각해서 폐교했을 때, 우리 농촌의 황폐화는 정말 더욱 심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주장이, 한 학급당 학생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하향조정이 되면 대부분 6학급이 유지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셔서, 학급당 학생 수를 7명으로만 낮추어도 42명만 넘으면 6학급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수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아도 6학급이 유지되면서, 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 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좀 적다는 이유로 개축을 지연한다든지 환경이 열악한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진지역 가산점 수혜학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좋

아졌다고 해서 농진지역 지정을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 가면은, 농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점수라도 있어야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유능한 교사가 왔다가 점수 관리가 안 되니까 1년만 되면 떠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농진지역 가산점 때문에 기피하는 학교가 있고 선호하는 학교가 있는데,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수한 교사가 농촌지역에 배치되기 위해서, 농진지역 지정지역을 확대했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건지, 그렇게 해서 우수한 교사가 벽지에 또 가산점이 붙는 연구학교, 어떤 학교는 그렇게 겹쳐있고, 어느 지역에는 그게 농진지역도 아니고 아무런 점수가 없어 기피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안배해서 우수한 교사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서, 학교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일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일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오늘 행정질의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쩌면은 마지막 행정질의가 아니겠는가, 제가 7년여 교육위원 생활을 하면서 어저녁에도 착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충북교육을 위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청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괴롭혀드렸나, 얼마만큼 고통을 드렸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제 나름대로의 교육위원으로서의 양심에 호소해서, 저의 그간의 느꼈던 또 바라던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행정질의의 성격은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과거의 행적이나 실정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해 달라는 그러한 과거의 관행적인 행정질의를 벗어나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충북교육의 새 교육감으로 직무를 시작하신지 불과 한 달이 못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제도에 연연하

지 않고, 교육감님이 쓰신 책에 저는 두 단원을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병석에 계시면서 텔레비전에 사랑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하다, 인간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은 결코 선생님이야, 나도 눈물을 흘렸노라,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주목한 대목이 내 젊음을 시작하는 한별교지의 그리운 선생님이라는 저는 대목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의 우리 충청북도의 국가대표급 탁구선수나 축구선수가 바로 그러한 선생님의 참 사랑에, 열기에, 열정에 저는 소산이라고 생각해서 두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감님이 새로 우리 충북교육의 수장이 된 이 마당에 저는 기대하는 바가 지대합니다.

제가 저의 심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몇 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서는 짧은 보궐선거에 당선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은 대단히 외롭고 저는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계층간 그리고 각 후보자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어울려서 협력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으로 전환하여, 신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

서 제시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학교의 총론적인 공약을 이미 70여 항목으로 각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을 잔여 임기에서 시행하기에는 대단히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저서에서 밝혀 주신 충분한 교육이론, 이러한 것은 우리 충북교육을 새롭게 변신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욱이 중병의 병상에서도 공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군인에 못지 않은 투철한 책임감, 그리고 청백리의 청렴한 결백한 이러한 좌우명, 이러한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상식에,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교육행정을 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감은 무한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충북교육 불행의 파탄 원인을, 고유 권한의 남용이라는 지적에 주의하시어서 신임 교육감은 민주적 관리로, 다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절대적 권한을 전면 분산하면서, 민주적 교육행정, 공정한 인사관리, 형평성에 맞는 투명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영원불변의 주춧돌을 놓아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립니다.

교육사회는 흔히 제도 탓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경향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도보다는 관철하려는 굳은 소신은 그 모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실천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충북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공심의 낮은 자세로 말하고 “내 탓이다, 네 덕이요” 라는 감사의 무역의 심성으로, 교육가족을 사랑하고 감싸고 이끌 때에, 말로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 주실 때, 우리교육의 많은 동지가 힘을 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치적의 평가는 이제 후에 역사에 맡겨둡시다.

항상 어느 때라도 명예로운 내일의 퇴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육감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 행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교원인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가 바로 제도나 의지나 여기에 능력중심의 초청교장, 또는 공개채용, 또는 발탁인사, 이러한 것이 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간의 교육인사제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감대를 얻은 부분도 상당히 있겠습니까마는, 불편한 불평, 근거 있는 불평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사제도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그 영향력을 좌우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벗어나시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시는, 앞으로의 교육감님의 방침은.....

임기가 2년이면서 4명이 외부인사고 3명이 내부인사입니다.

그럼에도 그 외부의 4명 인사를 솔직히 그 4분이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었는가, 또 이 임기가 끝나면은 계속있게 이러한 어느 학연이나 또는 지연에, 인연에 가까운 그러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인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장과 전문직, 교육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교장은 소위 말하는 환경이 좋은 학교에서도 3년을 근무하는가 하면은, 어느 교장선생님은 벽지에 가서도 2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교장선생님께 여쭙봤어요, “교장선생님, 희망을 안하셨으면 여기가 좋으십니까?”, “아이구, 저도 1년 되서는 염치가 없지만은, 2년 되서는 좀 이동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은 교장선생님 1년 하시고, 또 지역의 다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교육경력으로 보나 또 한 학교의 재임 기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그 교장선생님이 불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교장선생님 내년에 가셔야죠.”, “아유, 보내 주시면 가죠.”

이것이 충주지역에서도 약 50분간 가야 되는 비면소재지 이런 학교의 사례입니다.

절대로 그 선생님은 저에게 나는 여기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제가 학교요람을 보고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이 감사 징계에 대한 양정이 정확해야 된다, 양정이.

제가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만나서, “아, 교장선생님 참 다행스럽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급식 때문에 그렇게 혼나셨는데, 아 그래도 참 집 가까이 과히 멀지 않는데, 인사성 이런 것도 정규인사에 우리 교장선생님 뜻을 생각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 아무 말씀도 안하세요, 아유, 그래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아유 참 교장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아픈 말씀드려서”, 그것도 누구한테 전해들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그러실 분이 없다 이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청주에 모초등학교에 급식사고가 났는데, 그 급식 사고는 순수하게 학교의 음식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아무 말씀 안하시고 그저 돌아가신 선생님은 학교의 사고가 아니예요,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물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들은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상 예를 들은 겁니다.

또는 감사나 징계 양정의 문제, 기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한 우리가 육법 전서처럼 어떤 양정의 형편을 기준을 정할 수 없겠습니까마는, 상식에 벗어나는 이러한 인사제도는 하루속히 이것이 시정이 되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육장은 자 2년도 있고 어느 교육장은 1년도 있고 말입니다.

또 어떤 교장은 1년도 하고, 특수직으로도 가고,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채된 분이 말이에요.

교감이 3년, 교장이 3년, 아니 교사가 1정하려면 3년, 1정한다는 건 뭐니까?

그래도 객관성 있게 그 직에서 충분히 업무를 익힌 다음에, 차 업무를 볼 수 있

다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교육감님, 실무자를 제가 불러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에게 준 그러한 답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직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능률이나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 가면은 이코르 승진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무자가 되어 봐도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업무를 익히려면 상당한 경험이나, 또 죄송하지만 사람간에도 능력을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직에서 우리가 승진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사상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의 3배수를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일반직에 대한 승진, 전보, 이러한 제도 이것도 또 특히 지난 번에는 여직원에 대한 것을 상당히 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직뿐이 아니라 우리 전문직도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제도상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육감의 특수시책으로 남녀별, 지금 초등은 제가 알기로 60,70% 이상이 여선생님인데, 아무래도 가정관리하

다 보면은 남자선생님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시에 재직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남교사, 여교사의 근평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전문직이나 교장, 교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쪽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지 아닙니다마는, 교육장님의 임지결정에 대해서 어느 어느 시·도는 반드시 중등, 어디 어디는 초등, 제가 이것은 교육위원회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습니다.

타시·도 예는 우리 교육감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등, 중등간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선거 공약에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떡하면은 투명한 예산 또는 공명한 예산,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겠는가, 저는 투명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판공비도 내가 공개하겠다는데, 그 이상의 교육님 앞으로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의지는 저는 그것

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마는, 시행상, 시행상 효율예산은 요전 추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연말이면 이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 지난번 추경에 보편은 작년도의 이월금액이 수백 억이 쏟아져 나와요, 아직도 일선에서 아마 집행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6,7개월이 그냥 사장됩니다.

이러한 문제라든지 해서 이와 같은 예산상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올렸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 사업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중·장기, 단기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기수 위원님께서도 모학교에는 몇 천명인데 여기에는 다목적 강당이 하나도 없다,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바람직 한 거냐, 적어도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입니까? 컴퓨터를 활용한다면은 우리 충북의 교육재산에 대해서 연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학생 수나 이것으로 봐서 활용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예산이 떨어져서 시설을 준비하거나 선택하는 그러지는 않겠습니까마는, 마치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형평이 안맞아요, 제가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주의 충일중학

교 같은데는 김명식 교장이 20년 전부터 복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습장이 없어서 충주공고나 기타 학교에 전지 훈련을 합니다. 충일중학교 역사상이나 규모나 충주의 어느 중학교 보다 적습니까?

이런 것이 이러한 장·단기적인 소요 이것이 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히 시설에 대한 것, 심야전기면 여기다 해야 돼, 제가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송진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행정질의에서, 일반 연수나 교장 교감 자격연수나 어떠한 학운위 연수나 이럴 때에, 교육자치에 대한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없느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회답을 못받았습니다.

교육자치, 자치 하면서도 아까 송위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설명을 접겠습니다.

이것쯤 경기도 같으면 교육위원회 아무 위원 또는 외부인사라도 하겠지요, 2시간씩해서 자격연수, “교육위원회 이런거다,

여기서 이런 걸 하는 거요”, 해서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곁들여서 학운위의 올바른 운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육감님도 이번에 선거를 하시면서 애로가 많으실 줄 아는데, 앞으로 교육위원회 선거도 있는데, 시장, 군수, 도지사는 선거 날로부터 법적으로 업무가 정지되는데, 저는 출마하겠다는 우리 현직의 교사나 누가 있다면, 이 분들이 업무에 매달려서 지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연가의 형식이든 어떠한 간에 선거기간 중에는, 그 분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얻었다면, 다른 후보들과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교육감이 여기서에 대해서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기적으로 저는 종합진단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진단합니다.

조직이 잘못 됐느냐, 불량품이 왜 나오느냐, 왜 적자냐, 작년보다는 어떠냐, 미래에 대한 진단도 해 보고,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에 대한 진단을 우리 내적인 진단도 중요한데 밖에서 보는 진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직이나, 예산이나, 교육과정이

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3년에 한번씩은 이러한 진단을 정말 진솔하게 예산 좀 투자해서 이래 한다면은, 저희가 서해수련원이 좋으나, 나쁘냐 이런 시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북교육에 대한 종합진단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제가 제일 오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거듭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동차에 시트를 개조하셔서 이동 집무실을 마련하시고, 손수 교육감님의 의지를 펴신 것을 보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시책을 저는 묻는 겁니다, 시책을.

과거의 관행이 이런 것을 바로 잡으셔서 어떻게 해 주실 건가 하고 해 주시고, 제 끝으로의 바람은 또 하나는, 교육감님께서 이걸 떠나서라도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셨으면, 그래도 이 교육위원회가 우리 교육수요자라고 그럼니까, 가족들의 대표니까, 언제쯤 한번 제 소망입니다.

한번 내가 교육감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시책연설 한번 안해 보실래요, 시기가 촉박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간의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답시고 많이 괴롭혀 드리고 그래서, 이 자리를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충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족은 붙이지 않고 읽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는 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의문나는 점을 요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여러 위원님과 집행청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집행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시지 않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서해 수련원에 대한 추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특히 시설공사에 관한 것이고, 문제점에 대한 것은 수련원 주변에 비교육적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서해 수련원은 계획 당시부터 참 논란도 많았

으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논란들은 끝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일부 여론으로는 과연 서해 수련원의 공사를 현시점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건립 추진 당시에는 지역적 거리, 그 다음에 교통 불편 점에서 교육투자의 가치문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연 거기에서 짓는 것이 옳으나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참 집행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국고를 얻어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급하냐, 과연 거기다 그것을 짓는 것이 급하냐, 다른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나 라는 논란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적 환경의 문제, 즉 비교육적 문제로 비화되는 듯하여, 건립 승인에 불가피하게 동조하였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해 수련원내 시설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즉, 전체 공사의 몇 %나 진척되었으며, 집행액이 전체의 몇 %가 되었나 하는 걸

제가 묻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의 계획대로 현재로 봐서 준공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혹시 없는지, 혹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또 앞으로 설계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당초 계획된 소요 예산보다 추가 될 자금은 혹시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인지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고 공사중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데 사실인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제가 그간에 등한시켰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도 아마 그 얘기를 못들어서 아마 사람이 죽었다는데, 설마, 인부가 사망했다는데 있었다면 몇 명이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제가 좀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공사 책임진 사람이 전부 책임지는 것이지, 교육청으로써야 무슨 책임이 있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난 그건 모르는데, 여하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질의합니다.

다음은 서해 수련원의 교육적 환경문제에 대한 겁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서해 수련원의 교육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상승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속말로 대단한 상품적 가치화 했다고 합니다. 돈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수련원 주변이 러브호텔 등 환락화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지가 상승의 의미 부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을 유혹할 비교육적 유해 환경의 확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청소년 교육시설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보궐선거때, KBS에서 후보자들의 토의과정에서 몇 몇 후보자들은 중지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당선된 현 교육감은 당선되면 이를 심사숙고하여 구체적으로 그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생각으로는 결자해지라고 시작은 2대 위원회의 결정이었지만 추진·결정·승인은 3대 현 위원회입니다.

여론대로 만일 비교육적 교육환경의 가

능성이 있다고 하면, 심각하게 재논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그 진상을 재조사하고 그를 토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계속 추진여부의 단안을 내려야 하지 않나 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시설이라도 비교육적 환경화 되어 간다고 하면 사용을 중지할텐데, 건설 도중이라면 응당 재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구해 봐서 참 좋은 환경이다, 5년이 고 10년 후에도 괜찮겠다 이러면 뭐, 제가,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야에 책임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교육적인 진단을 받아보고 그 진단에 의하면 추진여부를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러한 여론이 본 위원으로서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교육공무원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론보도에 의하면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교육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어서, 선관위원으로부터 경고 및 검찰에 입건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그후 사법당국의 처리 진행과정, 그리고 집행청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사전에 질의 요지를 낸 거 이외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의보다도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교육감님은 인사는 정말 공평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듣기를 제가 원합니다.

누가 봐도 “아 전교육감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정말 새로운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 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충북교육계에 있었을 때 충북교육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끝나는 교육위원으로서, 마지막 질의시간에 이 자리에선 사람으로서 교육감에게 앙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원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심도있게 준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

습니다.

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충실을 기해 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5월 31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2.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집행정 당변)

(11시 00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안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 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이 2001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내용중 심의회의 구성 관련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회의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회의 구성인원을 당초 15인 이내에서 최소 구성인원을 규정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적정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석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손만재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견

(11시 05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견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답변을 모두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 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의장님 제가 여기 앉은 채로 질의를 하 나하겠습니다.

교육님,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질 의한 것을 이래 뭐 서면으로 준비 안하셨 어요? 답변서를.....

● 교육감 김천호

서면으로 안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자 료만 제가.....

● 조일환 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님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행정질문을 통해 교육위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들은 충 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 교육시책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 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 문하신 제7차 교육과정 추진과 관련한 질 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개별 화 교육, 수준별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화 교육의 방법은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교육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개별화 교육이 최고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교육여건상 시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화 교육은 제7차 과정에서 교과교육 활동 시에 수준별 수업으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등 교과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재량활동 시에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주제탐구학습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준별 교육의 방법은, 수준별 교육은 집단편성 방법에 따라서 수준별 편성에 따른 이동수업과 학급내 수준별 분단 편성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학급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20%, 학급내 수준별 분단 편성을 하는 학교가 80%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급내 수준별 분단편성을 하여 수준별 수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과정 중심으로 공통의 내용을 학습한 후, 수업 시간의 끝 부분이거나 단원의 끝 부분에서 학생의 성취 수준에 따라 심화학습, 보충학습으로 구분하여 한 두 시간 정도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급내 수

준별 분단편성에 따른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보충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진급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7시간에서 20시간씩 영어, 수학 교과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나 학부모들이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한 반대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은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예측하여 만든 것으로, IMF 파동이후 한국경제가 추락하여 대·중·소의 교과 교실 증축이 곤란하고,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교과 담당교사의 퇴출과 계약제 교원의 증가, 특수전공 부자격 교사의 임용 등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교원 신분의 불안정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시행의 어려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에 있으나, 현재 중학교에서는 2학년까지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고등학교는 2003년부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교원이 부전공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는 현상, 학생들의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편성에 따른 기피 교과의 이수 등

에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 측에서는 수준별 반편성을 교과별 우열반 편성으로 오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설사업이 완공되고, 제7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지도자료가 개발·완료되는 오는 7월말 이후에는, 초·중·고의 학교 현장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에 학급당 35명의 책정기준 및 이상적인 학급당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책정한 것은,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OECD국가수준으로 급당 인원을 하향하여 추진토록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책정된 기준이고, 이상적인 학급인원은 딱 몇 명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문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른 응답이 있었

는데, 강의식 교육인 경우에는 25명에서 35명 정도가, 토의식 또는 실험·실습 교육에는 25명 이하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며, 참고로 OECD국가중 주요 선진국의 급당 평균 인원은 일본이 31명, 프랑스 25명, 미국 23명, 영국 2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당 인원의 적정규모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봤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신설 18개교, 교실증축 224실 및 학급 증가로 인한 교실 내부비품비 등 총 소요액이 2,363억 5,899만원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그중 2,031억 6,882만원은 기부자 하였고, 향후 투자액은 331억 9,017만원 정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실험 가능 시기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과 연계되어야 하겠지만, 학교내 건축 공간이 부족한 청주와 충주지역 일부학교를 제외하고는, 초·중학교는 2005년에, 고등학교는 2004년에, 급당 35명 이하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송진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 중 공무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위원 825명, 학부모위원 2,117명, 총 2,942명 중 교육공무원 61명, 일반행정직 8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위원 1,661명 중 교원단체 가입현황은 한국교총 1,285명, 전교조 199명, 한교조 7명, 기타 복수가입 47명 등 1,538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교원위원 중 교총, 전교조, 한교조 가입 교원수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제3호에 의거,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경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인접된 학교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 건립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가경중학교와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건축할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경초등학교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나, 가경초등학교는 테니스 지정종목 육성교로 최소한 테니스장 1면은 계속 보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다목적교실을 건축할 부지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인근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0교시 수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0교시 수업의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0교시는 공식적인 교육활동을 일컫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시간대에 실시하는 자율학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학교의 등·하교시간은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사고과정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지나치게 이른 아침 시간에 등교시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등 물의를 빚는 일은 금지시키고 있으며, 충북은 지역적 여건상 대도시처럼 7시경부터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교시 수업 폐지를 위한 지침 시달 여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며, 지역적 여건을 고려, 학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타시·도 교육청의 0교시 수업 실태는 일부 언론기관에 의하여 제기된 0교시 수업, 즉 자율학습문제는 전국적으로 3월초 일부 부적응 1학년 학생들에 의하여 불만이 표출된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학교 별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보완되어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아침자율학습을 금지한다거나 단속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설학원 심화교육 폐지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 교습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학원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밤 11시 이후에 교습을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5월중에 청주교육청에서 교습시간을 위반한 2개 학원을 적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일부 학원에서 학교 시험기간 중에 밤 11시 이후 교습은 아니지만 자습형태로

운영한 곳이 있으나 이것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밤 10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와 강원도는 밤 12시 이후 교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는 교습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0교시 수업 폐지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제고 방안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충북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 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35개 학교를 지정하여 기초학력 확인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으로 학력제고를 도모하고자, 수업우수교사 발굴을 위한 수업연구 발표대회 개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습지도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24개팀의 학교 및 지역단위 교과연구회 운영,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교사들의 자율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16개 교과의 교과수업개선연구회 운영,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교과 10개 교과목에 대한 수준별 학습지도자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하여, 중학생에 대한 도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적응력 신장과 진학지도 자료 제공을 위하여, 각시·도 연합으로 고등학교 1·2학년은 각 4회, 3학년은 6회의 학력평가를 계획 추진하는 등 학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학력수준은 교육부 주관이나 시·도 교육청 연합 각종 학력고사에서 총점과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있어, 전국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자료는 없으나,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 등급을 분석한 결과, 평균 5.32 등급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다만 1등급 2.84%, 2등급이 4.97%인 점을 고려할 때 상위집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충원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해수련원 추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115억의 예산으로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5개 공사 종류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은 1층 바닥공사와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감 중에 있고, 전체 공정률은 20% 정도이며, 3개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착공당시 공기가 다소 지연되었으

나, 현재는 공사품질과 안전, 환경, 공정 등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당초 예정공기내인 2003년 3월 16일에 준공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변경 여부는 현재까지 설계변경한 사항은 없으나,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일공사 등을 정산하면, 설계변경 사항이 일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추가 소요액 등을 산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인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작업인부 사망사건은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10분경 후관동 기초공사장에서, 용역인부 1명이 원인불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보령경찰서, 노동부 보령사무소 및 산업안전공단과 유족들의 입회하에 현장확인 후 부검 후 장례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부검결과에 따라 시공회사와 관련기관 및 유족과의 합의하에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고, 현장의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해환경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수련원 부지는 보령시에서 수련시

설용지로 지정하여 분양된 것을 매입한 것이며, 서해수련원 뒤에는 민박 등의 숙박시설이 위치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은 유해시설이라기 보다는 피서객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해수련원 인근에는 청파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충남 및 대전교육청 수련원 그리고 한밭대, 서울산업대학교, 청주대 수련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해수련원이 완공되면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여, 여름철 성수기에는 가족캠프 등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를 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건전한 수련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충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음성관내 모초등학교 모교감을 지방교육자

치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2002년 4월 19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관계기관으로부터 동 건에 대하여 통보가 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일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교원 및 일반직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 형평성, 효율성을 고려한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원의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심사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엄정 적용하겠습니다. 인사 사전 예고제 실시, 교육장 추천 공모제 확대,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등 학연과 자연, 인맥을 타파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관련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 기준, 인사시기 등을 사전에 공개하여,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모든 공무원

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상급자·동료·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조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승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직, 교장인사의 기본방향과 국립대 진출 등 특별한 인사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장의 중임과 신규승진 임용시 학교관리능력, 건강상태 등 적격 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규칙에 따라 작성한 명부순으로 임명하고, 전보나 임지 배정시 학교경영능력과 생활근거지, 동일지역 근무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정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의 임지 결정 시 고정적인 지역 구분도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 진출은 국립대에서 요구하는 진출조건에 맞는 대상자의 진출희망을 받아 엄격히 심사하여 요구한 인원의 3배수를 추천하면, 국립학교의 장이 필요한 인원을 선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를 적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여교원과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임용의

적정비율, 공정성 시비 논란의 대책 및 적정 운영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55%이며 교장 14명으로 3.6%, 교감 19명으로 4.88%, 교육전문직 25명으로 12.8%, 부장교사 645명으로 30.3%로 여교원의 보직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녀 구성비를 감안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임용하도록 여교원 관리직 진출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 임용시 승진후보자 3배수 범위내에서 여교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2002년 6월에 실시할 전문직 전형에서 여성채용목표제 30%를 적용할 것이며, 여교원의 보직교사 진출확대, 각종 연구대회 참여 권장, 전문직 전형 응시를 적극 권장하는 등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414명으로 38%이며, 교육행정직의 경우 6급이상은 56명으로 17.4%입니다.

해마다 상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7급이하 남녀비율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급속하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비율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직과 시행방안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의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 25조에 의거,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9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참신한 외부인사를 선정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능력과 청렴성이 검증된 인사가 적재적소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현재 외부위원의 경우,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보다는 교육계 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법조계, 학계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및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교육국장 조병래

교육국장 조병래입니다.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인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활동 참여 현황 및 사교육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4월 30일 현재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 수강 중인 학생수는, 우리 도의 학생 총수의 약 39.8%인 87,200여명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 순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주로 재능이나 특기와 관련되는 분야에,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과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수강하고 있어, 부족한 교과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사교육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약24조원 정도로 GNP의 약 6.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사교육비 규모는 월 약 43억 6천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은 희망자만 하는 문제와 운영의 심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는 2001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된 용어로, 현재는 비정규교육활동프로그램 중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초·중학교에서는 예·체능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학교별로 다양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의 과외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은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실시하되, 학교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영역이나 운영시간 수, 관리방법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점수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교육부 훈령 제587호, 제616호에 의거 각 학교·급별의 학업성적 평가에 있어 종합석차제는 폐지하고 있으나, 각 교과목별로 학업성취도와 석차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도 점수에 따른 영역별 등급을 산출하여 활용하여 있습니다.

이는 종합석차제에 따른 한 줄 세우기식 평가로 인한 경쟁심 조장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정 분야의 재능이나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화 사회, 다원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적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송진하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영재교육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재교육 기본방향은, 2002년 4월 18일에 공포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의하여 수학, 과학,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을 설치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영재교육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수학·과학영재, 예·체능영재, 언어영재의 3분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학·과학영재는 학교과학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 지역교육청 청주, 충주, 제천에 지역영재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초등 2개반, 중등 4개반 등 총 6개반, 각 학급 20명씩 120명을 2002년 7월 20일까지 조직 완료 후, 지역공동 영재학급으로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과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과학영재 학생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체능영재는 특수재능아 교육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재능을 가진 학생을 중심으로 특수재능아 카드를 작성, 연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나 예술고등

학교 등을 운영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어영재는 폐교를 활용하여 언어체험 학습장을 설치하고, 언어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중에 방학을 이용,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며,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청주교육대학 및 유관기관의 영재교육원과 연계하여 영재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은 총 5,902만원으로,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조직 운영, 영재학급 설치,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및 판별도구의 개발, 영재학급 담당교사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재학급 대상학생 판별은, 학교장의 추천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과목별 필기시험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통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재교육 대상자 판별도구 및 지도자료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공동 부담으로 배정된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개발자료는 수학, 초등학교 4,5,6학년용, 중학교 1,2학년용과 과학, 초등학교 4,5,6학년용, 중학교 1,2학년용입니다.

영재학급 담당교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인원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수학, 과학 교과 전문교사를 20명 참여시

킬 예정입니다.

영재교육의 전망은, 국가 고급 인적자원의 조기발굴·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개발로 자아실현이 도모될 것입니다.

다음은 송진하 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인,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연수를 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조일환 위원님의 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연수에 대한 질문과 유사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감 자격연수, 유치원감 자격연수, 유치원·양호교사·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과정 등 각종 자격연수의 교육법규 시간에 지방자치에관한법을 설명시 교육위원회의 하는 일을 설명, 이해를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자격연수 과정에 넣어 교육위원회에 대한 위상제고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 및 지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기초학습 부진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습부진아 판별도구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한글 미해독자 수는 4학년 361명, 5학년 241명, 6학년 132명, 총 734명으로 전체학생 62,901명

의 1.17%에 해당되며, 연산능력 부진아 수는 4학년 342명, 5학년 205명, 6학년 139명, 총 686명으로 전체학생 62,901명의 1.09%에 해당됩니다.

중학교 1학년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한글미해독자 174명으로 전체학생 19,011명의 0.92%이고, 연산능력 부진학생은 223명으로 전체학생 수 19,011명의 1.17%에 해당됩니다.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책 및 지도 방안은, 초·중·고등학교 별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학습도우미제를 운영하여 기초학습 부진아를 지도하고 있으며, 학부모, 담임이 협력하여 학습부진아의 개별처방 및 학습과제를 해결하고, 기초학력 확인제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3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우수지도 사례를 전 학교에 일반화할 계획이며, 초·중·고별 각 1연구회씩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각급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부진아 지도 담당자 연수를 2002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기초학력검사를 2002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의 네 번째 질문 사항인 농촌학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진지역 가산점을 받고 있는 학교현황

과 가산점 수혜학교 확대 방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현재 농진지역 가산점을 받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08개교, 중등학교 41개교로 총 149개교입니다.

농진학교의 대부분이 지정 당시보다 도로사정이나 문화시설 등 제반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확대 지정이 곤란하며,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하는 벽지학교가 지정 해제될 경우 농진지역 가산점 부여 학교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수교사 배치계획은, 현재 농촌에 위치한 농진지역 가산점을 받는 학교는 젊고 유능한 우수교사가 희망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 농촌지역 학교에도 교감, 행정직, 교무보조인력 등을 배치하고, 연구학교지정 고려, 사택 개·보수 대여, 심야전기를 이용한 교실난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많은 우수교사가 농촌학교 근무를 희망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직 교원의 교육위원 출마시 배려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직 교원이 교육위원으로 출마할 경우 별다른 배려방법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필요 시에는 연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사립학교 건강보험료 납부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거 법인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영세법인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보험료를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에 건강보험료 부족부담액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학교운영비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

다.

타시·도 사립학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기준은 15개 시·도 중 11개 교육청이 법인의 부족부담액을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4개 교육청은 부족부담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사립학교 직원인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대우선발 및 근속승진제는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 기능직 정원은 10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타시·도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이를 모두 일시에 수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우선발·근속승진제 및 기능직 직급정원 조정문제는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현황은 2000년도에 45명, 2001년도에 3명, 2002년도에 8명을 실시하였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본도의 교육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인 벽지학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학급당 7명 이하로 하향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학급 편성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 및 제52조에 의거, 교육감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우리 교육청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학급당 8명 이하로 두 개 학년 합하여 16명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2002학년도 복식학급 편성 현황은 45개교에 90학급입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최저 학급당 7명 이하로 두 개 학년 합하여 10명 이하, 최고 학급당 10명 이하로 두 개 학년 합하여 20명 이하이며, 우리 교육청은 전국 각 교육청의 중간 수준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복식학급 편성기준은 교원수급 등 제반여건과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요인 등을 감안하여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학교 노후시설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벽지학교는 위원님께서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농촌의 이농현상에 따라 학급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벽지 학교 시설이 일부 노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벽지학교에 대하여도 장기수용계획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노후시설물의 보수 등 제반문제를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일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투명예산, 공평예산, 효율예산 집행을 위한 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교육예산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개선, 제7차 교육과정 시설 및 학교신설, 교육정보화사업 등 교육투자 수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바와 같이, 투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재정적 효율적 배분·활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역과 학교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종 교육여건을 감안한 재원배분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서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은 법령과 지침 등에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며, 각종 입찰정보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전자입찰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가계약제도 지속시행,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연계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영으로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균형있는 충북교육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환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물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시설사업은 학교별로 시설물의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사업의 효율성, 학교간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가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고 교육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부금의 규모, 국가정책과 도교육청 시책 또는 학교여건의 변화가 있어 사업별·학교별 시설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예산편성시 실정에 맞게 조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염려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시설사업의 우선순위 등은,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일환 위원님께서 일곱번째 질문하신, 충북교육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진단 실시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도 교육청 단위의 교육에 대한 외부진단평가는, '96년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분야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책수립은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학교운영위원회와 여러 내부 심사 기능을 통하여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외부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나, 교육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여 가량 지났습니다. 보충질문이 많지 않으면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고, 보충질문이 많을 것 같으면 정회 후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김광수 위원

보충질문, 보충질문을 하도록 잠깐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보충질문을 하시는 걸로.....

● 김광수 위원

아니, 아니, 잠깐 정회를 했다가 저희들 의견을 조율을 해서 보충질문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손만재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 조일환 위원

가만 있어요. 의장님?

● 의장 손만재

그리고서 다시 협의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의장님, 의장님.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질의시간이 어떻게 보면 항상 정기질의 보다는 또 보충질의가 의미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10분 후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간적인 제약도 받을 것 같고, 기왕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차라리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라든가 1시 반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손만재

어떻게 김광수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김광수 위원

예, 좋습니다.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시고, 집행청 관계관계에서도 앉아 계신 좌석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의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수준별 교육을 함으로써 학급에서 하건 또는 달리 반을 나눠서 하건, 수준별 교육을 하다 보면은 가부간에 상·중·하라든가 잘한다, 못한다 하는 우열이 거기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상·중·하로 볼 적에 하에 속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무엇인가가 위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심리적으로 볼 적에, 그래서 이어서 그 부형들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자녀가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잘하는 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원에 보내서 학원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학교교육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시 해요, 지금 현재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부형들의 생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학교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 학원을 가야 되고, 더군다나 그것을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찍이 조기 해외 유학까지 사태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별 교육을 보다 더 참 학생들에게 그런 자극이 가지 않도록 잘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농촌학교야 별 문제지만, 그래도 시 지역의 학교에서는 그런 관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동 수준별 수업이라는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개념

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과 기본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서 수준에 따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자료부터가 다릅니다.

가령 심화반에는 심화자료를 집어 넣고, 그 다음에 보통반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보통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충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충자료를 집어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에 알맞은 자료를 투입해서 그 수준에 알맞은 교육을 하는 것을 얘기를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따라 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학원에 나가 가지고서 공부해 보충을 해 가지고서 또 심화반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편성을 한다든지 또는 모둠을 편성할 때에, 학생의 의견이나 또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심화반에, 심화모듬에, 보충반에 또는 보충모듬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의 희망 또 학부모의 희망까지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탈락이 되가지고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된 특별보충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라든가 또 하기휴가, 동기휴가를 이용해 가지고서, 특별보

충수업을 진행을 해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더 보충을 해 주고 학습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조급한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손만재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진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답변을 이해가 되게끔 잘 해주셔서 보충질문 사항 없습니다.

● 의장 손만재

예, 끝마치겠습니까?

● 송진하 위원

예.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요건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소규모 벽지학교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규모 벽지학교의 시설투자는 경제원리보다는 교육

원리로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충주의 강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강만 하나 건너면 강원도 접경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에는 상당히 시설을 잘해 놨는데, 여기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안해 가지고 유치원 원사가 상당히 낡았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자가용을 타고서 좀 먼대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거기 유치원 원사만 하나 새로 지어주면 유치원도 현상유지를 할 수 있고, 학교도 한 60명 학생이 되니까 6학급 운영될 것 같은데, 시설투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원리보다는 교육원리로 해서 시설개축이 되어 가지고, 그 학교가 그 지역에 문화센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만재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충원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이충원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보충질문보다도 조금 도와주

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청소년단체에 관한 겁니다.

청소년 단체에 좀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나, IMF 이후에 교육청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옛날에 도와주시던 것을 전부 삭감해 버렸는데, 제가 조사를 한 것을 담당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면은 예산에 반영을 조금씩 안해 주신 데가 전국적으로 울산하고 충북 밖에 없어요, 다 좀 도와주셨는데.

이건 아마 청소년단체에 예산협조를 해주셔야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양청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보다도.....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충북하고 울산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요걸 좀 옛날에 하던 것을 복원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거 지금 담당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자료입니다.

● 교육감 김천호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 이충원 위원

아니에요, 답변보다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교육감입니다.

지금 청소년단체 활동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청소년단체

의 총재님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일시 중단됐던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대상이 8개 단체인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제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충원 위원

고맙습니다.

● 의장 손만재

없습니까?

● 이충원 위원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일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저는 이래 질의를 하면서 늘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제 저한테 와서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분수스럽게 많이 좀 욕심을 내고 그런 까닭입니다.

또 저도 이런 기회에 공부 좀 하고,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공무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 가지고 집에서 좀 이래 봤어요.

근데 규정과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이것이 어떤 성격이 있는 건지, 이 규정을 보니까 문교부의 훈령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저기 제가 교육감님께 여쭙볼까요?

교육감님, 이 규정에 대한 우리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던가, 그러니까 훈령으로 관리규정을 내려보낸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의무 사항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훈령의 내용 중에서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 조일환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교육감님 한테 재량행위로 위임한 사항은 교육감님이 그때 그때 다시 내부방침 내지는 어떤 철학 가지고 하시게 됩니다.

● 조일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할 때 몇 명 이상 이하란 말 가끔 씩니다.

여기도 보면 인사위원회가 여기 있는

걸 보면은 몇 명 이상 이하인데, 예를 들으면 3명 이상 그러면 3명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명까지죠. 3명도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3명 이상했을 경우에는 3명부터가 해당됩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예. 제가 잘 몰라서, 여기 보니까 근무평정이 있어요.

규정에 보면은 제8조제2항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일선학교에서 근무평정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말 실력대로 이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선생님이나 저도 똑같은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일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제가 단위를 말씀 올리면은 그 교장선생님이 평정자죠. 그 다음에 확인자는 누구입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교장선생님은 확인자고.....

● 조일환 위원

확인자고, 교감이.....

● 교육국장 조봉래

교감이 평정자입니다.

● 조일환 위원

교감이 평정자고, 그 다음에 교육장도

관계를 합니까? 관계 안하죠.

● 교육국장 조봉래

아니 교감일 경우에는 다르죠, 평교사, 평교사의 경우에는.....

● 조일환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교육감님께 서도 수직적인 이러한 평정도 하지만은, 수평적인 평정도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근평을 이러한 틀 때문에 수직적인 거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수평적으로 직위의 상하에서도 평정의 자료를 얻겠다, 저는 대단히 발전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발전적이라고.

지금 어느 학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되게 곤욕스러운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교감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고 아무리 유능한 선생님이 계셔도, 그 학교에 선생님의 평정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또 그런 분이 안계셔도 교사들의 평정은 경력이나 연구평점이나 가산점을 추정해 봤을 때, 다른 학교보다도 경쟁력 있게 유리한 쪽으로 이 평정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이라고.

그래서 참 정말 교육감님께서 수평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 앞으로 큰 어려움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정방법을 꼭 좀 실천 하셔서 정말로 유능한 선생님이 평가받도록.....

제가 먼저 번에 우리 단재교육원 얘기를 가끔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공로상이나 특별상이나 모든 상을 받은 분들, '82년부터 18차례의 그 수상자들 보면 전부가 교장, 전문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매년, 매년 그분들이 제일 단재상을 탈만큼 훌륭했느냐, 저는 이런 것도 교육감님께서서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그 수상의 심의도 되도록이면은 수직적인 이런 평가도 중요하다고마는, 가능하면은 수평적인 평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야말로 근평에 대해서 인사의 기초가 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충청북도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모습으로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인사위원회 조직이 여기에 나와있어요.

뭐 몇 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교육감님께서서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우리 청내 당연직이고, 3명이 외부인사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조직이 맞죠?

● 교육감 김천호

예.

● 조일환 위원

예, 그래 요전에 인사담당 실무 우리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저는 이게 바로 인사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의 그 윗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다 이거예요, 6대 3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솔직하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6대 3의 비율을, 비율을 거꾸로 해서 인사위원을 제대로 심의를 하셔서 구성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을.

제가 뭐 괜히 너무 의심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소지가 어떻게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감님께 우선 과제를 드립니다, 과제를.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문직으로 출발해서 교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 교육감 김천호

예,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있죠.

● 교육감 김천호

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전문직으로 처음 발탁이 됐으면은, 발탁이 됐으면은 그것을 교감의 경력으로 보니까?

● 교육감 김천호

교감과 동등한, 상응한 경력으로 봅니다.

● 조일환 위원

그걸로 보신다.

● 교육감 김천호

그러나 이게 교감 실경력은 물론 아니죠.

● 조일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행이 저는 바람직한 관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시죠.

● 교육감 김천호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조일환 위원

예. 또 처음 연구사나 전문직으로 발탁 되어서 3년이 못 되어서 교장으로 간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조일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교감의 경력이 전혀 없는데 연구사나 장학사로 제가 발탁이 됐어요, 임명을 받고.

3년, 교감의 상응직이라는 교감 최소한도 3년은 있어야 교장의 강습을 받죠, 그렇지요.

● 교육국장 조봉래

맞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런데 그런직에 3년이 안됐는데 교장의 자격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교육감 김천호

예,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교장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출, 강습대상자로 차출될 경우에, 상응직 경력 3년이 기준이지만 3년이 채 안되었어도 교장자격 대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수대상자를 시켰지만은 발령 낼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 3년이 넘은 사람으로 그렇게.....

● 조일환 위원

없다면은 참 다행스러운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파행적인 인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지 않다니까 대단히 다행스러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기로

는 그래도 교장에서 교육장이나 또는 직속기관의 장으로 원장이나 될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교직에서 상당한 승진이랄까 또 한차원 높은 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교감에서도 3년 이상해야 교장이 되고, 적어도 교장에서라도 그래도 3년 정도는 학교를 장리하는 경험이 있는 분이 교육장 되는 거와, 1년, 2년 해서 그런 분이 교육장으로 임명되는 거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께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실한 어떤 행정 관리의 교육이나 또는 박사학위를 받았다는가, 어떤 객관적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인사를 해도 무리가 없어, 하는 객관성이 없는 한은, 제 소견으로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관행적으로 이러한 선례를 남겨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이렇게 한번 과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평을 보니까 여자, 남자가 구분이 딱 되게 되어 있네요.

이게 법적으로 별도로 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 안올립니다마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2002년도 전문직 전형도 여성을 30%나 배

려를 하시겠다, 이러한 의지로 봐서 저희 지역에 여교사들께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더 교직에 봉사하리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인데, 아까 6대 3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전에 확인해 보니까, 7명인데 3대 4라고 들었어요. 우리 당연직이 3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 교육감 김천호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 조일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감 김천호

교원인사위원회가 있고요, 일반직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6대 3은 교원인사위원회고, 지금 말씀하신 4대 3은 일반직 인사위원회입니다.

● 조일환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께 그거에 대해서 전문직은 우리 당연직의 6이고 3이고, 일반직은 거꾸로 외부인사가 초청인사가 4고, 자체가 3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 교육감 김천호

3대 4로 되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건 그렇게 비율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규정에, 아 규정에.....

● 교육감 김천호

저희들이 교육감 임의로 정한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 조일환 위원

아, 규칙에.....

● 교육감 김천호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 상위법예요. 제가 그것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잡다한 것을 제가 좀 질의하면서, 저는 소년체전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으면서, 연구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저는 위원입니다.

쉬운 예로 일본 같은데는 초등학교는 노래중심의 학습이지, 체육의 선수전문직에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우선 우리 나라처럼 소년체전 같은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종목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정종목이라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충주대림초등학교에 여자축구를 지정을 하셨어요, 그죠. 연구 지정종목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선수가 안 돼, 선수가. 아직 여자에 대한, 그러면은 다른 학교학생들은 또 희망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처럼 사회, 지역사회에서 지도를 하도록, 그러면은 성남학교 학생 몇 명, 교현학교 학생 몇 명 희망을 해서 그 지도자는 누구냐, 사회에서 희망하는 사람, 그럼 우리 교육청은 뭘 하느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말이에요.

그래 일본 같은데는 클럽대항, 유가와 라와 가나까나갱이 소년 무슨 클럽, 무슨 클럽,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체격이 자라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어렸을 때 무리한 소위 체력훈련은 성장을 멈추게 하고 상당한 기능 발휘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체전의 등위가 4등, 5등 대단히 중요하다는, 저는 이러한 종목에 따라서는 사회체육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 예를 들면은,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학교에 야간나이트를 해줬어요. 왜 해줬느냐, 지역사람들이 저녁에 테니스도 하고 배구도 하라고, 이러

한 것이 소위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사랑 받는 학교다 말이에요.

심지어 일본 같은데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당이나 이런 곳도 저녁이면 9시 반에 다 일 끝나고 와서 그분들이 열고 배구하고 또 달고, 이렇게 학교시설을 사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이, 교육시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가 하나가 되어서 제공하고, 또 교육발전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실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감 김천호

예, 지금도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이나 시설 일부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했는데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사회와 학교체육이 일원화되는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학교 시설이나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 모든 사업의 순위가 결정되어서 그 부분의 예산

이 시달되면은, 그 미리 작성된 시설투자 계획에 의해서 작성할 것인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날까지는 물론 둘이 다 전혀 아닙니다마는, 때로는 예산이 먼저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옷을 맞추는,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동의하시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고, 이제 공정한 예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제는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미리 사전에 수요에 대한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면서, 아까도 우리 단가 입찰제를 계속하시겠다는 말씀, 이것은 정말로 고마우면서도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정말로 끝인데, 교장 임기제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장임기제에서 중임이 안됐는데 더 근무하겠다, 명퇴를 안하겠다 할 때는, 과거에 무슨 원로교사 제도 다 뭐다 상당히 떠들면서 제가 볼 때 하

나도 시행되는 걸 못봤어요.

그래서 교육감님 앞으로 교장연임제를 어떻게 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방안이 있으시면.....

● 교육감 김천호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는게, 계속 관심은 갖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그 병폐 아시다시피 전문직에서 일선에 나가고 싶어도 걸리고, 솔직한 얘기하십시오.

또 무리해서 당신 임기제 때문에 또 들어오고, 그런 인상을 안쳤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인사관행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도 불안하고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직 까지 우리 나라의 교장선생님들의 그 의식가지고 아마 교사로 돌아가려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교직자는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다른 드릴 말씀이 사실은 많습니니다.

그런데 앞에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하셨는데 저만 자꾸 이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제가 사석이라도 제가 오늘

못 드린 말씀을 꼭 제가 관계관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교육행정에만한질문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천호 교육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한 사항들이 모두 단순한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교육시책에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폐회)

[제141회-제3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3)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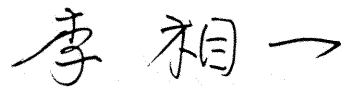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이 기 수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김 성 기



議 事 日 程 (案)

第141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2. 5. 28 ~ 5. 31 (4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5月 28日(火) (11:0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2. 5. 28. ~ 5. 31. (4 일간) 2.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5月 29日(水) (10:30)	[第2次 本會議]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月 30日(木)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조례심사소위원회	本會議 休會
5月 31日(金) (11:00)	[第3次 本會議]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안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집행청 답변) <input type="checkbox"/> 閉 會	

(별첨 2)

의안번호	제 141 -1 호
의 결	2002. 5. 31.
년 월 일	(제 141 회)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2. 5. 17.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과학실업교육과

제안이유

-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를 두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임무(안 제2조, 제3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기능(안 제4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정근거

-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

제정조례안 : 불 임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발췌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과학교육 진흥 업무와 관련되는 본청의 과장급 이상 및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
2.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④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3. 그밖에 과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과학교육진흥법 (법률 제6432호 2001. 3. 28)

제5조 (과학교육심의회) ①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 라 한다)를, 그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심의회와 지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심의회와 지방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3)

(제141회 임시회)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5. 3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5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5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5월 28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2년 5월 30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조봉래)

가. 제정이유

-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임무(안 제2조, 제3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의 기능(안 제4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7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이 2001. 9. 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내용이 적정하나 조례안 내용 중 심의회의 구성인원 및 위원의 임기관련 조항 일부를 수정함.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5. 31.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최소 구성인원을 명시하고,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적정하게 수정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심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안 제2조제1항)
-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2조제4항)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2년 5월 31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심의회 구성 최소인원을 명시하여 위원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적정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심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2조제4항)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 안 제2조제1항 중 “15인” 을 “9인 이상 15인” 으로 한다.
- 안 제2조제4항 중 “3년” 을 “2년”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 <생 략></p> <p>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u>15인</u> 이내로 구성한다.</p> <p>②~③ <생 략></p> <p>④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u>3년</u>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3조~제8조 <생 략></p> <p>부 칙 <생 략></p>	<p>제1조 <원안과 같음></p> <p>제2조(구성) ① <u>9인 이상 15인</u></p> <p>②~③ <원안과 같음></p> <p>④ <u>2년</u> .</p> <p>제3조~제8조 <원안과 같음></p> <p>부 칙 <원안과 같음></p>

조례심사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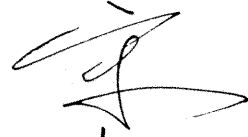
위원장 김 광 수



간사 이 충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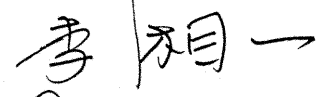
위원 송 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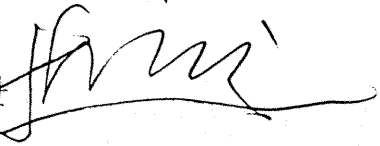
이 기 수



이 상 일



조 일 환



第14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03
II.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07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1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5월 28일 (화요일) 11시 23분

議事日程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3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조일환 위원

김광수 위원님, 한번도 안하셨잖아요.
오늘 한번 하시죠.

● 김광수 위원

안하는 거예요

● 조일환 위원

아니 한번도 안하셔서.....

● 김광수 위원

여기 가장 권위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여기 권위 있는 분이 있는데.....

● 조일환 위원

그게 실적을, 아니 위원들을 평가해도 이게 실적을 따져도, 이거 저 무능한 위원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김광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여기 저 그냥 임시의장이 해요, 그 자리에서.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요.

● 김광수 위원

그 자리에서 해요, 그냥.

물 한잔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뭘.....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추천해 주세요.

● 이기수 위원

의장님, 안하실래요.

● 김광수 위원

안하고 싶어.....

● 이기수 위원

그냥, 다른 분 추천해 주세요.

● 김광수 위원

그냥 임시의장이 그냥 해요.

● 이기수 위원

조의장이 하시면 어떻겠어요.

● 조일환 위원

아니 뭐 전 다르게 뭐 있어서, 저는 어차피 김광수 위원님을 제가 추천해 놓고 제가 한다면 욱먹잖아요.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어떡하나요?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그냥 받아주시죠.

어떠세요?

● 이상일 위원

예, 좋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이 하시죠.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네, 김광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고대)

● 위원장 김광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
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견

(11시 25분)

●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
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
일한 방법으로 간사도 선출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원 위원

제가 하지요, 뭐.

아무것도 잘한게 없으니까, 안되요, 자
격없어요.

● 이상일 위원

아니 좋습니다.

● 이충원 위원

간사를 한번도 안해 본 것 같아요,
간사인가 참.....

● 이기수 위원

간사예요, 간사.

● 이충원 위원

간사를 한번밖에 안해 봤는데, 제가 할
게요.

● 위원장 김광수

예, 이충원 위원님이 자청을 하셨습니
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원 모두 “좋습니다.” 라고 말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충원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
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원 위원님
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
기 바랍니다.

● 간사 이충원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7분)

● 위원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다.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5월 30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0일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조례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충원,
위 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조일환.

○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5월 30일 (목요일) 11시 05분

議事日程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분 05 개회)

●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과학실업교육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입니다.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28일 공포한 과학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이 200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7386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시·도 담당자 회의를 2001년 12월 19일날 회의를 했고, 이어서 조

례안을 작성해서 2002년 2월 6일 결재를 받아서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에 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2002년 3월 16일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3월 22일 원안가결을 받아서 의안심의 요청을 하여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조는 제정의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심의회 위원의 위촉과 임명, 임기, 제3조는 위원장의 임무, 제4조는 과학교육종합교육 및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한 교육감님의 부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회의소집과 의결, 제6조와 7조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 교육청으로 과학교육에 관한 업무가 위임되었고, 정책 우선 순위에서 우선 후순위로 뒤쳐진 침체된 과학교육에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가 설치·운영되므로 해서, 시책 추진의 부진이나 예산조치 부족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의 권고로, 과학교육진흥에 대한 새로운 활력의 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하면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본회의(별첨 2)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의 좌석 순으로 이렇게 하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송진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해방 후 역대 정권에서 과학교육을 가장 우선 순위로 정책적으로 수행한 그러한 과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과학교육과가 있었고, 과학교육연구원이 있었고, 또 시·군별로 과학관을 설립을 했고, 이렇게 아주 중점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 저 의가 확실한 건 몰라도, 앞으로 더욱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교육진흥에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뜻에서 조례를 지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낮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선 시행해 보고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가부 어떻다고 본 위원이 얘기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질문 마치는 겁니까?

● 송진하 위원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를수록 좋은 조례 제정인데, 구성원을 이렇게 보면 15인으로 되어 있고, 부교육감이 위원장이시고, 교육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시고, 간사가 과장님이 간사되

시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장학사님이.....

● 이기수 위원

장학사님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몇 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13분 정도는 추천된 분들인데, 대개 집행청 과장님들이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된다면, 일반인들 어디 몇 자리 들어가고 대학교수든지 그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 들어가실 텐데, 되도록이면 집행청 공무원들이 다수 들어가느니 보다는,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참여해 갖고서, 객관적 평가에 의해 갖고서 모든 결 회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그것이 그냥 집행청 공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위원회가 같은 신설할 필요 없이 간부회의라든지 다른 쪽에서 계획해 갖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이 위원회가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위원들을 좀 다수 참여시켜 갖고서 거기의 좋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지금 이기수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학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과학교육심의회라는 것이 생겨난 그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래에 특히 송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건국 이래 계속해서 과학교육을 중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근래에 와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인문계로다가 수학능력시험을 보고서 자연계를 교차 지원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로 볼 때에, 특히 과학교육 전문가 되도록이면은 기초과학에 조예가 깊으시고 과학교육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구성된 뒤에도 연 몇 회를 해야 한다든지 어떤 구속력은 없는 거지요, 필요할 때 소집해서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 구성이 되면 좀 정례회를 한다든지 월례회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과학교육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근래 뭐 여기서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를 안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유야무야 한데 기왕이면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게 일선에 가보면은 실업계 학교 학생들 수가 자꾸 감축 되는 게 큰 문제더라구요, 저희들이 10년전만 해도 실업계하고 인문계 비율이 6대 4로 인문계보다 실업계를 더했는데, 지금 거꾸로 5대 5되다가 6대 4로 실업계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런데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성하는 목적이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거라면, 정말 활성화 돼 가지고 명실상부한 과학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운영해 주십쇼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 간사 이충원

특별히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그러면 조일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일환 위원

제가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을 말씀을 듣고 제가 어제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과학교육진흥법 이거에서 근거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건데, 전에도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5조 때문에 한다고하고 뒤에 보면은 필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법률의 조항을 보면 우리 안준데 보면 있습니다.

근데 관계법령 발취해서 이러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러한 법 전체를 주시면은 제가 봐도 참고가 되요, 저는 달래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광범위하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그런데 지금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진흥법은

2001년 3월 28일 전문 개정했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난 12월 19일날 회의를 하고, 우리 청에서 2월 16일날 입법예고를 한 건지.....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예,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우리 청에서도 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네, 네.

● 조일환 위원

뒤에 대한 걸 입법예고 합니까?

이 조례에 대한 겁니까?

● 과학교육실업과장 김겸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육청 법제심의회를 거쳐서 가지고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겠지, 조례를 입법예고한 거죠, 그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네, 네.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입법예고를 하셨다 이말 아니에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네, 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를 시행을 했는데 아무런 별다른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제출했다 이런 뜻이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네, 그렇습니다.

● 조일환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네, 네.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2조에 보시면 지금 구성에서 몇 명 이하로만 되어 있어요, 이하.

그런데 대계가 어느 위원회든 간에 최저의 리미트 단위를 만들고 최대 얼마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15인 이하 그러면은 막말로 5명이 해도 좋고 몇 명이 해도 좋은 건지, 그래서 여기의 한계를 최저의 인원을 왜 안뒀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지금 타 시·도를 3군대를 제가 여쭙봤어요. 여쭙봤는데, 서울특별시 12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어요.

● 조일환 위원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 1인을 포함

한 11인이니까 11인이 맞네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그리고 대전하고 충남은 아직도 작업을 착수 못했어요. 저희들 그냥 시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한 겁니다.

15인 이내니까 하한선도 없고, 전문인을 모아서 심의할 수 인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있다가 제가 좀 여쭙 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조례라도 최저 5명 또는 최저 7인해서 얼마를 못 넘는다 하는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다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기능이 있죠, 기능. 제4조에 보면 기능이 있는데 제가 과학교육진흥법을 보고 대조를 해 봤어요. 대조, 대조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청에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이러이러한 항이고, 이것은 법이니까 중앙에, 중앙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여기다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1항 이것은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청에서.

두 번째, 과학교원의 양성, 확보, 처우 및 교육, 이것은 적어도 중앙심의위원회

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저희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과학교재·교구의 개발, 보급, 실험시설의 확충, 이것은 저희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네, 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은, 요 2항에 대한 것은 심의에 저희 지역에서 대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과학교육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건 중앙 단위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저희들 안해도 좋을 것 같고, 다섯번째,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구조 이것도 저희들 하고는 조금 해당이 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 과학관의 설치·운영, 이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설치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여기 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7번에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이것도 중앙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8번.....

● 위원장 김광수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조일환 위원

이 법령집 지금 복사해서 나눠 드렸죠.

거기에 제3조에 나옵니다.

● 송진하 위원

아, 여기 우리는 없는데.....

● 조일환 위원

왜 이걸 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나눠드렸는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있어요.

● 위원장 김광수

3조에.....

● 조일환 위원

예, 예. 3조에 기능ियो. 임무죠.

그 다음에 8번에 과학연구단체의 지원 이것도 우리 청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청소년과학행사 개최와 지원 이것도 아마 중앙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포괄적으로 그밖에 과학진흥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항, 2항, 3항, 5항, 10항 이것이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에 포함이 되는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저기 있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단위의 종합계획을 원래 2001년 12월말까지 교육부 종합계획안이 나오면은, 그것을 지역 교육청에 시달해서 지역 교육청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종합계획이 지금 조례안에서 설치

한 과학교육심의회를 거쳐서 과학교육진흥을 하라는 그런 뜻인데, 아직도 중앙단위 종합계획이 만나왔어요.

● 조일환 위원

중앙 것도 만나왔어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경

중앙 것도 만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서울은 지금 기능에 3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 보면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가 첨가됐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봤는데, 하나만 더 첨가가 된 겁니다. 과학관 설립에 대한 거만 첨가가 됐어요.

2항으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과학관이 충청북도와 같이 지역교육청별로 시·군단위로 저희는 11개가 다 설치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과학관 계획이 이미 오래 전서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부지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다 설치 못해서 그 조항만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조항만 하나 더 그리고 이거 1, 2, 3항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시책이 안나온 상태에서 결정해서 조례안만 먼저 통과하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보면은 저희들 기능은 2항과 3항은 어떻게 보면은 중복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은, 과학교육을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그랬다 말이죠, 또 세 번째는 그밖에 과학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과학관이라든가 이 시설에 관한 거를 별도로 두고 3항을 그냥 살려두면은, 포괄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부다 여기서 심의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은 있다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은 수당과 여비가 있죠, 그렇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경

네.

● 조일환 위원

심의회 회의에서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뭐 의무조항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나요?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 조봉래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위원만 거마비를 조금씩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글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뭐 5만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5만원.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직 우리 공무수행에서 하는 분들도 최소한의 수당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복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차별화해서 외부의 심의위원은 질적으로, 이것을 소위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만원 가지고 누가 여기 와서 몇 시간씩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당의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는 제8조에서 시행규칙이 있을 겁니다.

여기 그렇죠. 시행규칙이 있죠, 8조에.

이 조례시행에 대한 것은, 시행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규칙이라는 거는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규정이 아니죠.

규칙을 할 때에 규칙의 어떤 초안 같은 거 잡으신 거 있으세요.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경

아직 못 잡았습니다.

● 조일환 위원

아직 못 잡았어요.

그렇다면 초안을 잡으실 때에, 이런 수당 같은 거나 정말 돈을 들여 가지고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제경쟁을 위해서 글러벌 시대를 대비해서 과학, 수학만 살길이다 말이에요. 이런 취지에서 어느 과목과 다르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러한 규칙이 되도록 좀 규칙을 잘해 주시도록 규칙을 심의를 안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례에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속기록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우리가 제정할 때에, 이 과학진흥법의 본래의 목적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또 충북과학교육이 저는 타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정보화를 비롯해서, 그래서 충북교육의 특색의 하나인 과학교육 이거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하실 때 아주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우리 위원회도 잘 아시는 분 계시니까 모셔다가 의견을 들으셔서, 규칙을 그냥 교육감이 제정만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경

네.

● 조일환 위원

그런 좋은 규칙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수

예, 조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시면은 조일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도 계셨고, 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좀 다른 수정 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의가 있는 우리 조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일환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 다마는, 제가 수정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2조의 구성에서 15인 이내 앞에다가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최

저 단위가 9인이죠. 9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두 번째로는 임기에서 4번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고서 3자를 2년으로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수

조일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또 그 구성인원에 9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 최저 인원을 9인으로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기수 위원

동의가 들어 왔는데 저는 재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 없으시죠.

(위원 모두 “예” 하고 말함)

전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안을 수정한 데는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수정한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일환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일환 위원

거기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 위원장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조례안을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거수)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표결결과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광수, 간사 이충원,

위원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2명

교육국장 조봉래,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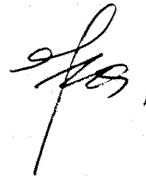
-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본회의(별첨 2)

제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6. .

위원장

김광수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4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2. 5. 28. (화) 본회의 종료후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2. 5. 30. (목) 11:00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의결)	

